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민행정부담완화및불편
해소를위한18개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법제처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심사전

1. 의결주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호나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2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를 “인우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로 한다.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를 “인우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로 한다.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유족대표자 선정방법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21조제6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가) 앞면 제1호(3)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4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제5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카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0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4)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5)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6)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제6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7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가벼운 처분”을 “각각 나머지 처분”으로 한다.
제8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한다.

제9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가) 제1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다) 제1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0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가) 뒤쪽, 별지 제2호서식(나) 뒤쪽, 별지 제2호서식(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라)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가) 제1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다) 제1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1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별지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2조(「암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가벼운 처분”을 “각각 나머지 처분”으로 한다.

제14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7조(「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18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람기간이 공고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 ----- ----- ----- ----- -----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 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3. ----- ----- ----- --
가. <u>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u>	가. <u>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u>
<u>1부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u>	<u>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u>

<u>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라 한다)로 갈음 할 수 있다] 1부</u> 나. (생 략) <u>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 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 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 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인감증명서(본인서 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u> 4. (생 략)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 할 수 있는 2명의 <u>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u> 6.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 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	나. (현행과 같음) <u>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 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 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 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u> 4. (현행과 같음) 5. ----- ----- ----- ----- ----- <u>인우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u>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 ----- -----
--	---

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 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u>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 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 다) 1부</u>	-----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	-----		
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		
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	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	-----		
서正本과 신청인의 <u>인감증명서</u>	서正本과 신청인의 <u>인감증명서</u>	----- <u>인감증명서</u>		
및 계좌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및 계좌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u>(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	-----		
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 ⑤ (생 략)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⑥-----		
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	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	-----		
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	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	-----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	-----		
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	-----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의 <u>인감증명서</u> 1부 ⑦ (생 략)	2. ----- <u>인감증명서</u> 또는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⑦ (현행과 같음)
---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 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 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 ----- ----- 단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지----- ----- ----- -----. 1. <u>광장</u> 2. <u>공원</u> 3. <u>유원지</u> 4. <u>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 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u>위임장 및 인감증명서</u> 각 1부 (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⑤ (생략)	----- ----- ----- <u>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략)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 ----- ----- ----- ----- ----- ----- 14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正本과 신청인의 <u>인감증명서</u>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 ----- ----- ----- ----- ----- ----- ----- ----- <u>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u> ----- --.
1. ~ 5.(생략)	1. ~ 5.(현행과 같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 략)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 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청인의 <u>인감증명서</u> 1부 3.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인감증명서</u> 또는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3. (현행과 같음)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투자의향서) ① (생략)	제5조(투자의향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감증명서</u>	4. <u>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u>

신·구조문대비표

– 2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 ----- ----- ----- ----- <u>제출(전자적 방법을 통 한 제출을 포함한다)</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생략)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 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 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① (생 략)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 지소유자의 <u>인감증명서</u> 와 소유 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u>인감증명서(또는 본</u> <u>인서명사실확인서)</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823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2258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5544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2277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3228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2804